

大韓建築士協会 定款

本協会 定款이 1974. 10. 26開催한 第九回 定期総会에서 定款 一部을
改正된 建設部에 承認要請한바 1974年12月30日字로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本協会 定款을 게재합니다.

第1章 総則

第1條：本会는 建築士法에 依하여 設立한 法人으로서
大韓建築士協会(以下本協会라 한다.)라 부른다.

第2條：本協会는 事務所開設登録을 마친者로서 組織한다.

第3條：本協会는 建築士의 品位 保全, 相互 親睦 및 権益擁護와 建築士事務의 健全한 發展을 通하여 建築의 質的 向上을 期하고 아울러 国家의 建築施策에 이바지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本協会의 主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두고 各支部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 釜山直割市 및 各道에 둔다.

第5條：本協会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為하여 다음 各項에 關한 事業을 한다.

1. 建築 및 建築士業務에 關한 研究, 調査, 統計, 鑑定, 証明 및 宣伝
2. 建築士業務報酬基準에 對한 策定
3. 會員의 業務에 關하여 發生하는 紛爭에 對한 調停
4. 建築에 關한 教養, 作品發表 및 資材展示
5. 建築에 關한 國際機構에의 參与와 國際交流
6. 會員의 厚生을 為한 共濟會의 設立.
7. 本協会의 機関紙 刊行 및 出版.
8. 地方의 으로 必要 不可缺한 支部 事業에 對한 補助
9. 其他 第3条의 目的 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6條：本協会는 이 定款으로 定하는 外에 組織과 業務運營上 必要한 事項을 規程으로 이를 定할 수 있다.

第二章 会員

第7條：本協会에는 다음의 會員을 둔다.

1. 正会員
2. 推戴会員
3. 名譽会員
4. 贊助会員

第8條

1. 正会員은 建築士法에 依拠 建築事務所開設을 登錄한 者로 한다.
2. 推戴会員은 다음 각号의 1에 該當하는 正会員으로서 総會에서 推戴받은 사람으로 한다.

- ① 本協会에 功勞가 많은 正会員
- ② 滿65才 以上의 正会員
3. 名譽会員은 著明한 外國建築士로서 理事會에서 推戴받은 사람으로 한다.
4. 贊助会員은 本協会의 事業目的을 贊同하는 個人 또는 法人으로 한다.

第9條：

1. 本協会의 正会員은 다음의 權利를 갖는다.
 - ① 発議 및 議決權
 - ② 選舉 및 被選舉權
 - ③ 會員은 書面이나 代理人으로서 議決權을 行事할 수 없다.

第10條：

1. 本協会의 正会員은 다음의 義務를 가진다.
 - ① 定款 및 諸規程의 尊守
 - ② 倫理規約의 尊守
 - ③ 立会費 및 各種会費의 納付
2. 推戴会員이 된 正会員에게는 正會員会費中 月定会費를 免除한다.

第11條：

1. 正会員이 本協会에 定款 및 倫理規約을 違反하였을 때는 本會의 倫理委員會는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그 情狀에 따라 다음의 懲戒를 한다.
 - ① 勸告
 - ② 講責
 - ③ 資格停止
 - ④ 除名
2. 倫理規約 및 倫理委員會의 規程은 別途로 定한다.
3. 正会員이 納付하는 正会員의 会費를 未納하였을 때에는 第1項의 規程에 不拘하고 支部長의 意見을 들어 理事會의 議決로서 다음과 같이 处理할 수 있다.
 - ① 3個月 以上 未納하였을 때에는 講責
 - ② 6個月 以上 未納하였을 때에는 會員資格停止
 - ③ 1年以上 未納하였을 때에는 除名

第12條

1. 正会員이 建築士法令 本協会의 定款 및 諸規程의 定하는 바에 따라 営業停止 또는 資格停止의 处分을 받았을 때에는 그停止期間中 本協会의 會員으로서의 權利가停止된다.
2. 前項에 該當하는 會員이 本協会의 任員 또는 代議員 일때는 그 处分을 받은 날부터 그 職責이 解任된다.

第13條：正会員이 建築士免許取消处分을 받거나 또는 免許가 消滅되었을 때에는 本協会에서 除名된다.

第三章 任 員

第14條：本協会에서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会長 : 1名
2. 総務理事 : 1名 (理事中에서 互選한다.)
3. 理事 : 4名
4. 監事 : 2名

第15條

1. 会長은 本協会를 代表하며, 会務를 統理하고 総會 및 理事会의 議長이 된다.
2. 総務理事는 会長을 補佐하며 会長 有故時는 職務를 代行한다.
3. 理事는 理事会를 組織하며, 本協会의 運營에 関한 諸般事項을 議決한다.
4. 監事는 本協会의 業務 및 会計事務를 監查하여 이를 総會에 報告한다.

第16條：会長・理事 및 監事는 総會에서 選出한다.

第17條：1.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重任할 수 있다.
2. 任員中 理事 3名 監事 1名의 任期는 初会에 限하여 1年으로 한다.
3. 任員中 缺員이 생긴 境遇에는 30日以内에 補選하되,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残任期間으로 한다.
다만, 任期満了 90日 以内에 缺員이 생긴 境遇에는 理事会의 決議로서 補選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8條：任員中 会長 및 理事의 就任은 主務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19條：

1. 本協会에 顧問若干名을 두되, 国内の 著名한 人土中에서 理事会가 이를 推戴한다.
2. 顧問은 会長의 諮問에 応한다.

第4章 会 議

第20條：本會議는 다음의 會議를 둔다.

1. 総会
2. 理事会
3. 委員会

第21條

1. 総会를 区分하여 定期 및 臨時의 2種으로 한다.
2. 総会는 代議員으로서 이를 構成한다.
3. 代議員은 各市道支部 単位로 正会員數를 基準하여 正会員 7人에 對하여 1人의 比率로 選出되며, 그 端數가 4人以上일 때에는 이를 7人으로 한다.
4. 定期總會는 每年10月中에 召集한다.
5. 臨時總會는 다음의 경우에 召集한다.

- ① 理事会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 ② 代議員總數의 3分의 1 以上이 會議目的을 提示하고 召集의 要求가 있을 때
- ③ 正会員總數 3分의 1 以上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
- ④ 監事의 召集 要求가 있을 때

第22條

1. 総會는 会長이 이를 召集한다.
2. 総會의 召集은 最少限 10日前에 総會의 目的事項, 日時 場所等을 表示한 文書로서 會員에게 通知함과 同時に 서울特別市内에서 発刊하는 日刊新聞에 公告한다.

第23條：総會에서는 다음의 事項을 議決한다.

1. 定款改正
2. 任員改選
3. 事業報告書, 財產目錄, 損益計算書 및 貸借對照表의 承認
4. 事業計劃 및 収支予算의 承認
5. 基本 財產의 設置 및 処分
6. 諸規程의 制定 및 改廢
7. 其他 理事会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附議하는 事項

第24條

1. 総會는 代議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하며, 出席代議員 過半數賛成으로 議決한다.
2. 賛反 同數인 境遇는 会長이 이를 決定한다.
3. 定款改正은 出席代議員 3分之 2 以上的 賛成으로 議決한다.
4. 総會에서 出席代議員 過半數의 動議가 있을 때에는 第23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를 議決할 수 있다.

第25條

1. 理事会는 会長 및 理事로서 組織하고 必要에 따라 每月 1回以上 会長이 이를 召集한다.
2. 理事会는 総會의 委任事項 및 会務執行에 関한 諸般事項을 議決한다.
3. 理事会는 会長 및 理事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며, 出席過半數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賛反同數일 때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4. 監事 및 支部長은 理事会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26條：本協会에는 다음의 委員會를 둔다.

- | | |
|---------|---------------------------|
| ① 企劃委員會 | ② 倫理委員會 |
| ③ 編纂委員會 | ④ 指導委員會 |
| ⑤ 研究委員會 | ⑥ 其他 委員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委員會 |

第27條：1. 委員會에는 委員長 1名, 委員 若干名을 두되, 理事会가 이를 選任한다.

- 委员의 任期는 1年으로 하되, 重任할 수 있다.
- 委員會의 成員 및 議決方法은 別途規程이 없는 限理事會에 関한 節次에 따른다.
- 各種 委員會의 規程은 別途로 定한다.

第五章 事務機構

- 第28條** : 1. 本協會에 事務처를 두고 处長 1名과 若干名의 職員을 둔다.
 2. 处長은 理事會의 議決로서 會長이 이를 任命한다.
 3. 处長은 會長의 命을 받아 会務를 处理하며,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第29條 : 1. 事務처에는 다음의 部署를 둔다.

- 總務部 2. 技術部 3. 企劃部
 4. 事業部 5. 出版部
- 부에는 担当職員을 두되,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會長이 이를 任命한다.

- 第30條** : 1. 會長·理事·監事 및 委員은 名譽職으로 하고 事務處長 및 其他職員은 有給으로 하되, 報酬額은 報酬規程에 依한다.
 2. 任員 및 委員이 会務를 執行하기 為하여 費用이 所要될 때에는 그 実費를 支給하고 辨公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六章 財產 및 会計

第31條 : 本協會의 財政은 立会費, 正會員費, 贊助會費, 및 事業収益金等으로 充當한다.

- 立会費………正會員이 되었을 때 納付하는 入会金
- 正會員의 会費………正會員이 納付하는 月定会費 및 事業 実績에 따라 別途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納付하는 会費
- 贊助會費………贊助會員이 納付하는 会費
- 事業收入………会誌刊行에 따르는 広告料事業 計劃에 따르는 刊行物配付代金
- 手數料………諸證明 手數料
- 其他收入………其他 雜收入

- 第32條** : 1. 本協會의 会計年度는 1年으로 하고, 每年 1月 1日에 始作하여 同年 12月 31日에 마감한다.
 다만, 当該年度中에 確定된 収入金과 支出金의 収納 및 支出은 다음年度 1月 31일까지로 한다.
 2. 本協會에는 特別会計를 둘 수 있다.

第33條 : 會長은 每年 2月末日까지 前年度 財產目錄, 損益計算書, 収支決算書 및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 監事의 監查를 받아야 하며, 다음 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七章 支 部

第34條 : 支部는 다음 각号에 関한 事業을 한다.

- 建築 및 建築土業務에 関한 研究·調查·統計·鑑定·證明 및 宣伝.
- 建築에 関한 會員의 教養 및 作品發表
- 協會 本部에서 委任 받은 事項
- 其他 幹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된 事業

第35條 : 支部에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 支部長 1名
- 幹事(幹事의 定員은 다음과 같다.)
 가. 會員이 50名 以內인 支部는 3名
 나. 會員이 51名 乃至 200名인 支部는 5名
 다. 會員이 201名 乃至 400名인 支部는 7名
 라. 會員이 401名 以上인 支部는 9名
- 監事 2名
- 代議員數는 第21条(3)項에 規定한 바에 따른다.
- 分所長 分所當 1名

- 第36條** : 1. 支部長은 支部를 代表하여, 支部 會務를 統理하고 支部 總會 및 幹事會의 議長이 된다.
 2. 支部長 有故時에는 支部長이 指名한 幹事が 이를 代行한다.
 3. 幹事會는 幹事로서 組織하며, 支部의 運營에 関한 諸般事項을 議決한다.
 4. 監事는 支部의 業務와 會計事務를 監查하여 이를 支部 總會에 報告한다.
 5. 監事 및 分所長은 幹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37條 : 支部長, 幹事, 監事, 代議員 및 分所長은 支部 總會에서 選出한다.

第38條 : 1. 支部長, 幹事, 監事 및 分所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重任할 수 있다.

- 代議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 任員의 補選과 그 任期는 第17条 第3項에 規定한 바에 따른다.

第39條 : 支部가 分所를 設置코자 할 때에는 協會의 承認을 받는다.

第40條 : 支部에는 다음의 會議를 둔다,

- 總會
- 幹事會
- 委員會

第41條 : 1. 総会는定期 및 臨時의 二種으로 한다.
2. 総会는 支部所属 正会員으로 이를構成한다.
3. 定期 総会는 每年 本会 総会後 1個月内에 召集하고 臨時總会는 다음의 境遇에 召集한다.
① 幹事会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② 支部所属 正会員總數 3分의 1 以上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
③ 監事의 召集 requirement가 있을 때

第42條 : 総会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任員 改選
2. 事業報告書, 財產目錄, 損益計算書 및 貸借對照表의 承認
3. 事業計画 및 収支予算의 承認
4. 基本財產의 設置 및 处分
- ~~5. 諸規定의 制定 및 改變~~
6. 其他 幹事会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請議하는 事項

第43條 : 総会의 召集者 成員 및 議決에 関한 事項等은 協會總會에 関한 規定에 따른다. 다만, 正会員이 300名을 超過하는 支部의 総会는 所屬된 正会員의 3分의 1以上出席으로 成立할 수 있다.

第44條 : 幹事会는 支部長 및 幹事로 組織하며, 召集成員 및 議決에 関한 事項은 理事會에 関한 規定에 따른다.

第45條 : 支部에는 다음의 委員會를 둔다.

1. 指導委員會
2. 会館建立 委員會

第46條 : 委員會 規程은 協會의 委員會에 関한 規程에 따른다.

第47條 : 1. 支部에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長 1名과 若干名의 職員을 둘 수 있다.
2. 事務局長은 幹事会의 議決을 거쳐 支部長의 提請으로 會長이 任命한다.
3. 事務局長은 支部長의 命을 받아 支部의 会務를 处理하며,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第48條 : 1. 事務局에는 다음의 部署를 둘 수 있다.
1. 総務 2. 技術 3. 事業
2. 各部署의 職員은 幹事会의 議決을 받아 支部長이 이를 任免한다.

第49條 : 1. 支部長, 幹事, 監事, 代議員, 分所長 및 委員은 名譽職으로 하고, 事務局長 및 職員은 有給으로 하되, 報酬額은 報酬規程에 依한다.
2. 任員 및 委員이 会務를 執行하기 為하여 費用이 들 때에는 그 実費를 支給한다.

第50條 : 支部가 総会를 가졌을 때는 10日以内에 다음 書類를 갖추어 協會의 承認을 받는다.

1. 創立 総会의 境遇
 - 가. 会員名单 (姓名, 住所, 級別, 事務所所在地 等包含)
 - 나. 任員의 名單 및 履歷書
 - 다. 事業計画書 및 収支予算書
 - 라. 総会會議錄
2. 定期 総会의 境遇
 - 가. 会員名单
 - 나. 改選된 任員名单 및 履歷書
 - 다. 事業 計画書 및 収支予算書
 - 라. 総会 會議錄
3. 臨時 総会의 境遇
 - 가. 議決된 事項
 - 나. 総会 會議錄
 - 다. 事業報告書 및 収支決算書

第51條 : 支部가 総会에서 承認된 事業計画書 以外에 事業을 遂行코자 할 때는 그 事業의 實施 10日前에 다음의 書類를 갖추어 協會의 承認을 받는다.

1. 事業種目
2. 事業計画書 및 収支予算書

第52條 :

1. 支部는 每月 10일까지 会務에 関하여 다음과 같이 協會에 報告한다.
 - ① 前月의 一般会務報告書
 - ② 前月의 事業報告書 및 會計報告書
 - ③ 그달의 事業計画 및 収支予算書
2. 月例報告分에 特殊事項 또는 突發事項이 있을 때에는 即時 協會에 報告한다.

第53條 : 支部는 一般会務 및 會計에 関하여 協會의 監事を 年 1回 以上받는다.

第54條 :

1. 支部의 財政은 支部에서 収入되는 正会員会費, 贊助金 및 事業収益金中 本部納入金을 除外한 金額으로 充當한다.
2. 支部에 配定되는 金額 및 補助金은 協會의 定期 総会에서 定한다.

第55條 : 支部의 會計年度는 1年으로 하고 每年 1月 1日에 始作하여 同年 12月 31日에 磨勘한다. 다만, 当該 年度中에 確定된 収益金과 支出金의 収納 및 支出은 다음 年度 1月 31日까지로 한다.

第56條 : 支部長은 每年 1月末日까지 前年度 財產目錄, 損益計算書, 収支決算書 및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 監查를 받아야 하며 다음 総会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八章 附 則

創立総会에서 選出된 任員은 第21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 定款의 規定에 의하여 選出된 것으로 본다.

附 則

本定款은 西紀 1965年 12月 3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定款은 西紀 1966年 11月 8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定款은 西紀 1967年 3月 24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定款은 西紀 1968年 7月 15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定款은 西紀 1970年 3月 6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定款은 西紀 1971年 11月 26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定款은 西紀 1973年 10月 27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定款은 西紀 1974年 7月 9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 (施行日) 本定款은 1974年 12月 30日부터 施行한다.

2) (支部幹事의 任期에 對한 經過措置)

第38條 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1975年度 定期總會에서 選出되는 幹事에 限하여 幹事定員의 過半數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其他 幹事의 任期는 1년으로 한다.

定款改正承認對照內容

條項號	改正承認申請內容	改 正 認 可 內 容
條項號		
8	① 正會員은 建築士法에 의거 建築士事務所開設을 登錄한 建築士로 한다.	左 同
	② 正會員으로 加入하는 建築士는 本協會 所定의 入会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第10條 1項会費納付義務條項에 삽입, 認可
	③ 事務所坪數規制 및 他業種의 兼用禁止 改正件	削 除
	④ 추대회원 資格 (공로가 많은者, 65才 이상)	左同 (改正 2 項)
10	② 추대회원의 正會員會費中 実績会費免除	左同 認可
23	⑥ 現行總會議決事項인제 규정의 이사회 제정	削 除
	⑦ 總會議決事項中字句修正. 理事會에서 必要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左同 認可
25	제규정 개폐 理事會議決	削 除
29	① 本部의 部署呼稱은 局으로 變更	指導部署 技術部로 變更 認可하고 部署 局으로 험은 削除

30			職員의 보수액은 報酬規程에 의한다.
35	2	支部幹事의 定員調整 회員50名以下 3名 회원51~150名以下 5名 회원151~450名 以下 회원451 以上 9名	下記와 같이 認可 (左同) 51~200名 以下 5名 201~400名 以下 7名 401~以上 9名
45		支部委員會 指導委員會, 會館建 立委員會	左 同
47	①	支部의 事務長을 事務 局長으로	左 同
	②	支部事務局長을 支部 長의 提請으로 會長이 任免한다.	左 同
2		指導를 技術로 附 則	左 同 事務局長 및 職員의 報 酬는 報酬規程에 의한 다.
	①	施行日, 主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부터 施 行.	施行日, 建設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부터 施 行.
	②	75年度 定期總會에 限 하여 過半數는 2年, 其他는 1年任期로 한 다.	左 同